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설 등〉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46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설	2
2.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용역 위수탁 및 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	9
※ 참고자료	
1.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현황	12
2.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용역비 집행현황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성일중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2024. 9. 24.
3. 회부연월일: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 증대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이나 수출을 위한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숫자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을 위한 검증·개량 목적 시험의 증가로 총포·화약 시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소음, 추진제 연소 시험에 따른 분진·연무·비친화적 화학 냄새, 시험 특성상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 인한 생업 및 조업 제한이 잦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부담 또한 증대됨.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출을 위한 시험을 의뢰받을 때 방위산업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출 목적의 시험으로 생활에 제한을 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민들의 지원과 수출 목적의 시험을 위한 용역계약의 근거를 각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Ⅲ. 검토의견

1.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설

□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 범위에 방위산업물자등¹⁾을 수출하거나 민수용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시험 등이 이루어지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의 주변지역 중 군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①·② (생략)	제7조(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장비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장비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시험·사업화 및 기술지원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시험·사업화 및 기술지원과 위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시험장으로 인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포함된 면·동을 말한다) 지원사업

- 최근 방산 수출 활성화에 따른 수출을 위한 검증·개량 목적 시험의 증가로 총포·화약 시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소음, 추진제 연소 시험에 따른 분진·연무·비친화적 화학 냄새로 인한 생활 방해와 시험 특성상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 인한 생업 및 조업 제한이 잦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반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장 지역 일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에 대한 개별적 보상만 가능하고, 그 금액 또한 크지 않아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금전적·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특히, 안흥시험장²⁾의 경우 유도무기 비행 시험, 총포탄약 시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시험장보다 이로 인한 소음 공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 발생 및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방산 수출을 위한 장비의 시험 등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험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³⁾

2) 참고자료: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현황

3)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 소음피해대책 위원회 시위현황(자료: 국방부)

- 시험장 정문 시위: '20.12.28 ~ '22.6월 말(540여 일)
 - 시위 경과
 - '20.10.16. 도항리(태안군 근흥면 도항리) 소음피해대책 위원회 발족
 - '20.12.28. 안흥시험장 정문에서 시위 시작
 - '21.02.19. 국방과학연구소 소음피해대책위원회로 조직 확대(근흥면)
 - '21.03.10. 시험장 정문에서 대규모 시위(TJB 보도)

[2022년 이후 안홍시험장 민수·수출용 시험 일수]

구분	업체개발	수출품
2022년	84	15
2023년	185	64
2024년(8월 기준)	83	90

* 자료: 국방부

□ 다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총 7개의 시험장 가운데 개정안에서 지원 사업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군 소음 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시험장은 안홍시험장(충남 태안 소재) 한 곳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험장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현황]

시험장 명칭	소재지	시험 분야
종합시험장 (안홍시험장)	충남 태안	○ 유도무기 비행 시험 ○ 정적 시험 ○ 총포탄약 시험 ○ 환경 시험
거제시험소	경남 거제	○ 수중/수상 무인정 시험 ○ 특수성능 시험 - 수중방사소음 시험 - 적외선(IR) 시험 - 함정 RCS 시험

시험장 명칭	소재지	시험 분야
삼척해양 연구센터	강원 삼척	○ 해군 훈련(대공/대잠) 분석
항공시험장	충남 해미	○ 유/무인기 비행 시험 ○ 전자파 및 환경 시험 ○ 추진 시험
특수화력시험장	경기 포천	○ 탄두 위력/충돌/회수 시험 ○ 표적 분산도 시험 ○ 관통/방호 성능 시험 ○ 화약 기폭 시험
창원시험장	경남 창원	○ 기동 성능 시험 ○ 차량 특성/동력계 시험 ○ 내구도 시험 ○ 다목적 수상/수중 시험 ○ 로봇 시험
전자시험장	세종시	○ 전자전 시험 ○ 군 위성통신 시험 ○ 안테나 원전계 시험 ○ 다목적 야외 시험

* 자료: 국방과학연구소

또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안홍시험장을 포함하여 군용비행장·사격장 등의 소음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소음영향도 평가 등 절차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⁴⁾

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등에 따라 구역별(제1종 ~제3종)로 월 3~6만원임.⁵⁾ 이에 따라 안흥시험장 주변지역에 대한 군소음보상금(2023년도)은 1,878명에 대하여 5억 9,089만원이 지급되었음.⁶⁾

[안흥시험장 군소음보상금 지급 현황]

(인원/금액: 명/천원)

사격장	종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지급 인원	지급 금액	지급 인원	지급 금액	지급 인원	지급 금액
안흥시 험장 ⁷⁾	1종	14	8,696	20	12,948	22	9,646
	2종	421	177,710	437	175,825	435	160,091
	3종	1,379	412,481	1,429	402,124	1,395	354,605
합 계		1,803	598,887	1,878	590,897	1,838	524,343

* 자료: 국방부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전국 48개 군용비행장 및 1,134개 군사격장 중 소음피해가 큰 군용비행장과 항공기, 전차·포사격장 등 대형화기 사격장 약 200 개소가 우선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서 소음대책지역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됨. 월 지급단가는 제1종구역 6만원, 제2종구역 4만 5천원, 제3종구역 3만원임.

6) 이외 국방과학연구소는 출연금 중 대민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시험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아동센터 후원, 지역 경로자 태안사랑 상품권 지급, 중장비 지원 등을 하고 있음.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의 대민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편성)
예 산	1.2	1.26	1.3	1.72	1.51	1.7	1.6	1.64

7) 안흥시험장 주변 지역(군흥면, 남면) 주민 수 : '22년: 9,530명 / '23년: 9,567명 / '24년: 9,570명

국방기술품질원 등 다른 유사 기관의 시험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 개정안은 단순히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재원, 지원 내용과 범위, 추진 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지역 주민들의 부담 확대에 따른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정안에 동의하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 재원을 민수·수출용 시험에 대한 기술용역비 수입으로 한정하는 등 그 지원 대상과 방법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반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로도 소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여 개별법에 의한 추가적인 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2.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용역 위수탁 및 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

-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업 범위에 연구시설·인력을 활용한 기술용역의 위탁·수탁 및 지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제3항제4호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①·② (생략)	제7조(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연구소가 개발한 병기·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시험·사업화 및 기술지원</u>	3. <u>연구소가 개발한 병기·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시험·사업화 및 기술지원과 위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구소 시험</u>

현행	개정안
	장 주변지역(시험장으로 인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포함된 면·동을 말한다) 지원사업
<신설>	4. 연구소의 연구시설·인력을 활용한 기술용역의 위탁·수탁 및 지원

□ 현행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용역 위탁·수탁 및 지원 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법이 아닌 국방과학연구소 정관 제4조에 근거하여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방산업체로부터 수출을 위한 시험을 의뢰받을 때 방산업체와 체결하는 기술용역 수탁계약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왕왕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기술용역 위수탁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쟁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리고 현재 기술용역의 연구기관 등에 위탁의 경우에는 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제4항8)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구소의 사업 범위에 이를 명시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12

8)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국방과학연구소 안홍시험장 현황

- (개 설) '77.4월 안홍시험장 건설
- (면적) 5,700,147m² (약 170만평) * 충남 안홍외 지역 4개소, 도서지역 11개소
- (주요기능) 유도무기 비행시험, 정적시험, 총포탄약시험, 환경시험

[유도무기 비행시험]

 원격측정 원격측정용 자동추적 장비 원격측정 수신기	 시험통제소	 레이더 추적 계측 레이더 도플러 레이더
 광학계측 광학추적장비 고속카메라	 안전통제 해상탐지 레이더 해상안전통제선 / 열상카메라	 기상관측 지면기상 고공기상

[총포탄약시험]

 추진기관 연소시험	 탄두위력시험	 탄두안전도시험	 발사대 성능시험
 탄두시험	 탄두낙하시험	 탄두관통시험	

2.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용역비 집행현황

□ 기술용역 종류 및 내용

구 분	정 의
민군수용	민수용: 외부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 상용품의 생산이나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술지원 사업 군수용: 외부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 군수품의 생산이나 연구개발과 관련되거나 방산물자/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술지원 사업
기술이전	외부 기관 및 업체로부터 요청받아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
수출 기술지원	방산물자/기술의 수출을 위해 국내업체로부터 요청받아 수행하는 기술지원('23.1.1.부터 군수용 기술용역에 통합)
군지원	군 관련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기술지원 사업
연구용역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구소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수탁한 타 부처 출연 민·군기술협력사업 및 과제를 포함
민군겸용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기타사업	부가가치세, 자체연구개발, 직장어린이집 정부지원금 등

□ 최근 3년간 기술용역비 수입·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계	당해	이월	계	집행액	차년도 이월			집행잔액
						소계	미지출액	미계약액	
2023	1,199,879	851,039	348,840	1,199,879	788,589	359,632	92,672	266,960	51,658
2022	821,266	568,439	252,827	821,266	438,258	355,205	89,328	265,877	27,803
2021	821,693	558,200	263,493	821,693	538,296	256,485	20,771	235,714	26,912